

2026년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4차 모집공고



수출 초보기업의 안정적인
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를 위한
[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]
위험대응 유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9.1.
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

2026년 주요 변경사항

변경사항	'25	'26
수행기관 평가항목 신설	신규 항목 없음	(신규) 수행기관 평가항목 3종 신설 - 투입인력 전문성 · 조직역량 25점 -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체계 15점 - 문제해결 및 대응역량 10점
수행기관 평가항목 변경	협업 적절성 10점 변동사항 예측 충실성 10점 실현가능성 20점 사업 및 기술 이해도 20점	수행기관 평가항목 폐지 - 협업 적절성 · 변동사항 예측 충실성 평가항목 명칭 변경 - 실현가능성 → 수행계획 적정성 (20점) - 사업 및 기술 이해도 → 기술분야 이해도 (10점)

1. 사업목적 :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진단을 통한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

2. 신청자격 : 위험진단 유형 지원 완료 기업

3. 지원내용

※ 위험대응 유형은 위험진단 유형에서 지원받은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선택 가능하며, 권리별 및 세부유형 선택에 따라 총 사업비 차등화

구분			세부유형
위험대응	특허	선택	무효분석
			회피설계
	상표	선택	수출국가 상표 네이밍 확보 패키지
	디자인	선택	무효분석

수행기관 선정방식

- * 지정: 지원기업이 위험진단 유형을 수행한 전문기관과 함께 지원·신청하고 동시 심사를 통해 선정
- * 공모: 지원기업이 위험진단 유형을 수행한 전문기관과 함께 지원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 후 전문기관풀 내에서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

4. 지원사업비

구분			최대 사업비(원)
위험대응	특허	무효분석	4,000,000
		회피설계	5,000,000
	상표	수출국가 상표 네이밍 확보 패키지	3,000,000
	디자인	무효분석	2,000,0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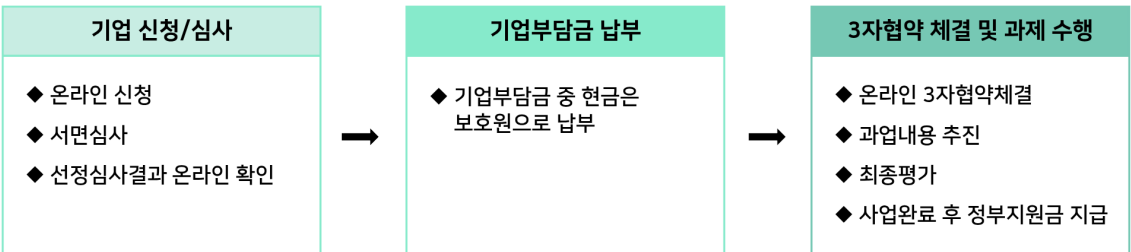
※ 세부 유형별 사업비는 최대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선정심사 과정에서 지원기업이 신청한 선택과제에 따라 사업비가 감액될 수 있음

5. 지원비율 : 총 사업비의 70~80% 지원

구분	정부지원 비율	기업 부담 비율	
		현금	현물
소기업	80%	0%	20%
중기업	80%	10%	10%
중견기업	70%	15%	15%

※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

6. 지원절차 :



7. 신청기간 : 2026. 9. 1.(화) ~ 9. 11.(금) 16시

8. 신청방법 : 사업관리시스템(<http://ip-navi.or.kr/ipdrms>)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

사업신청 바로가기

공고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,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필수

※ 기업 및 수행기관 유의사항: 정부지원금이나 기업부담금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 제재를 취할 수 있음

※ 동일내용으로 보호원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불가

※ 선정 이후 정부·지자체 타사업과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 발견 시 환수조치